

「도로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령(안)

1. 개정 이유

점용료 감면기준 등 도로법 개정(공포 '22.06.10., 시행 '22.12.11.)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,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(완화) 및 점용료 부과·징수 유예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신설도로 노면의 굴착제한 예외기준 명확화(완화)(안 제56조제6항)

- 1) 신설·확장·개량한 도로의 굴착제한(차도 3년, 보도 2년)은 노면을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함에 따라
- 2) 도로노면을 훼손하지 않는 굴진공법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신설도로 등의 노면에 대해 굴착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화 하려는 것임

나. 점용료 감면기준 명확화(안 제73조)

- 1)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점용료 감면조항 중 “재해”가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”으로 개정되어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

다. 점용료 부과·징수 유예 근거 마련(안 제71조)

- 1) 재난 발생 등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료 부과·징수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 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6항 중 “신설·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·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”를 “도로공사(보수(補修)공사는 제외한다)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”로 하고, “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”를 “포장된 도로노면을 개착하여 굴착하는 도로점용허가를”로 하며, 제56조제6항제7호 중 “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”를 “굴착공사로서 포장된 도로노면을 개착하는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”로 한다.

제69조제1항 중 “제71조제7항에서”를 “제71조제8항에서”로 한다.

제71조제3항부터 제7항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등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점용료의 부과·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

제73조제3항제2호 중 “재해나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6조(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)	제56조(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)
① ~ ⑤ (생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<u>신설·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·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</u> 3년(보도인 경우에는 2년) 이내에는 <u>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</u> 를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⑥ <u>도로법 제2조제7호의 도로공사(보수(補修)공사는 제외한다)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</u> ----- ----- <u>포장된 도로노면을 개착방식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</u> 를 ----- -----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기존 주택지역 또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·전기통신·상하수도·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<u>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,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</u>	7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굴착공사로서 포장된 도로노면을 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,</u> -----

현행	개정안
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. (생략) 제69조(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)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(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)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(이하 “점용료”라 한다)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. ② ~ ③ (생략) 제71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 및 반환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③ ~ ⑦ (생략)	----- ----- 8. (현행과 같음) 제69조(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71조제8항에서 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제71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 및 반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등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점용료의 부과·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 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73조(점용료의 감면) ① ~ ② (생략)	제73조(점용료의 감면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③ ----- ----- -----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<u>재해나</u>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	2. ----- -- 「 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 」 제3조제1호에 따른 <u>재난이나</u> -----
3. ~ 4. (생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